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1호 2021. 9. 2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예천군 조례 제2454호)
-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예천군 조례 제2455호)
-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456호)
-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57호)
-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58호)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11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4호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우리군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제4조)

-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

다. 평가대상(제7조)

- 입법평가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하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라. 평가시기 및 기준(제8조)

-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
 -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
 -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평가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5호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신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

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9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2조 ~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에 관한 사항(제5조)

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9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 군·경찰·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15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16조)

-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6호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 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6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제3조)

-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나. 지원 절차(제5조)

-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7호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할 것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할 것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
-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2.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기능(제3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나. 군수의 책무(제4조)

-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설치기준 등(제5조)

-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등
-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라. 예산의 지원 등(제7조)

-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지원

마.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제8조)

- 사서자격증 소지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8호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
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
· 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자·출연한 기관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
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에 관한 사항(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제6조)

마.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 및 제8조)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예천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포상금품 제공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정비(안 제2조제1호)

- 후생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군의원, 청원경찰 추가
-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

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후생복지사업 삭제(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삭제)

- 시행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치 이행
- 추진목적 : 퇴직예정자(장기근속)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과 기념금품 지급은 예산낭비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권고조치 이행

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간사 변경(안 제18조제4항)

- 총무팀장 → 후생복지팀장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54-650-6842, 팩스 : 054-650-6309
- 전자우편 : rrtt697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중 “총무팀장”을 “후생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에 소속된 <u>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u> 를 말한다. 2. · 3. (생 략) 3. ~ 5. (생 략)	제2조(정의) ----- -----. 1. ----- ----- <u>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원근로자</u> ----- -----. 2.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u>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 외 연수 지원</u> 6. <u>정년 ·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u> 7. ~ 12. (생 략)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7.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총무팀장</u> 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후생복지팀장</u> ---.